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9-45호
2019. 7. 12.(금)

차 례

고 시(3)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9-87호) ·····1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2-미호1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제2019-88호) ·····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9-90호) ·····6

공 고(5)

- 신탄진역 앞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공고 제2019-632호) ·····7
-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공고 제2019-634호) ·····12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638호) ·····19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640호) ·····21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19-641호) ·····23

입법예고(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627호) ·····2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628호)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19-637호) ·····41

공 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 2019-87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변경전		변경후		비고
		평면직각종횡선좌표		평면직각종횡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5814	322389.53	238303.78	322389.63	238303.63	재설치
도근점	〃	422698.97	238373.76	422697.05	238374.89	세계측지계 재관측
도근점	5815	322344.88	238279.72	322344.73	238279.55	재설치
도근점	〃	422650.30	238350.66	422652.12	238350.79	세계측지계 재관측
	이	하		여	백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측 량 년 월 일	2019년 7월 3일
측량성과보관장소	대덕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표지재질(철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88호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소로2-미호1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덕구 고시 제2018-95호(2018. 7. 6.)로 실시계획 고시하여 추진중인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의 변경사항(도로 비탈면 및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지번 변경, 임야번지 등록전환에 따른 필지 수 및 면적 변경,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준공기간 변경)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변경)하여 동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의거 동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고시문 및 지형도면 열람 가능)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재생과(☎042-608-687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1)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미호1	6~53	국지 도로	2,143 (2,013)	미호 4 35-1	삼정 2 1-2	일반 도로	-	2006.9.4. (대전청 20 06-94)	법면부 포함 방재시설과 중복 결정
변경	소로	2	미호1	6~53	국지 도로	2,561 (2,013)	미호 4 35-1	소로3-삼정2	일반 도로	-	2006.9.4. (대전청 20 06-94)	도로연장

※주 : ( )는 대청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방재시설과 중복결정 구간임

2) 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미호1	◦ 연장 : 2,561m(변경없음) ◦ 폭 : 10~14m(변경없음) - 면적변경 - 기간변경	◦ 도로 비탈면 및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지번 변경, 임야번지 등록전환에 따른 필지 수 및 면적 변경 ◦ 토지 매입 지연 등에 따른 준공기간 변경

2 도시관리계획(도로) 지형도면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고시	소로	2	미호1	6~53	국지도로	2,561	미호 435-1	소로3-삼정2	일반 도로	
기승인	소로	2	미호1	6~53	국지도로	2,143	미호 435-1	삼정 21-2	일반 도로	
금회 승인	소로	2	미호1	6~53	국지도로	2,561	미호 435-1	소로3-삼정2	일반 도로	종점 연장

3 실시계획(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 산9-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 사업의 명칭 : 이촌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라.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 도로 확·포장 L=418m, B=10~14m
- 사업면적 : 당초 12필지 4,303㎡ ⇒ 변경 19필지 4,634㎡(증 331㎡)

마. 변경 사유

- 도로 비탈면 및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지번 변경, 임야번지 등록전환에 따른 필지 수 및 면적 변경
- 토지 매입 지연 등에 따른 준공기간 변경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2018. 8. 31. ~ 2019. 12. 31. ⇒ 변경 2018. 8. 31. ~ 2020.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소	권리 관계	
소계					20,966	4,303	4,634						
1	삼정동	25	25	도로	62	12	26	대전광역시					
2	삼정동	25-5	25-5	도로	15	15	15	차희옥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61, 1006동 1002호 (관평동, 대덕테크노밸리10단지)	북대전 농업협동 조합	대전 유성구 구즉로 76(송강동)	근저당	
3	삼정동	27-1	27-1	도로	83	13	21	대전광역시					
4	삼정동	30-6	30-6	임야	5	5	5	대전광역시 대덕구					
5	삼정동	30-3	30-3	도로	582	11	11	대덕구					

6	삼정동	산 5-3	산 5-3	도로	1,147	115	115	대전광역시					
7	삼정동	산 9-7	산 9-7	임야	700	700	700	대전광역시 대덕구					
8	삼정동	산 9-3	산 9-3	도로	3,389	1,044	1,059	대덕구					
9	삼정동	산 10-8	산 10-8	임야	112	297	112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10	삼정동	-	산 10-13	임야	162	-	162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11	삼정동	산 10-12	산 10-12	도로	1,442	1,442	1,442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12	삼정동	-	산 10-14	도로	1	-	1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13	미호동	산 70-59	산 70-59	임야	302	393	302	대전광역시 대덕구					
14	미호동	-	산 70-60	임야	231	-	231	이충렬	대전시 중구 삼천동 179				
15	미호동	산 70-32	산 70-32	도로	932	256	256	대덕구					
16	삼정동	-	25-3	전	100	-	27	차선명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32				
17	삼정동	-	30-1	임야	3,926	-	3	경주이씨봉정대 부공파종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 308				
18	삼정동	-	산10-6	도로	1,174	-	100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19	삼정동	-	산10-7	임야	6,601	-	46	경주이씨 삼은공파종중	대덕군 신탄진읍 삼정리 15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후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임(지장물건은 조정될 수 있음)

4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19-9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 고
오정동 707	한밭대로 1025-1	2019. 7. 12.	거리가게 부여	시의 역사성 및 공간적 위상 반영	
와동 1185, 1186, 116, 338	신탄진로318번안길 29	2019. 7. 12.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3,1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법동 370	계족로 681-1	2019. 7. 12.	거리가게 부여	지역 명산인 계족산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632호

신탄진역 앞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선정 입찰 공고

※ 참고사항

- 본 주차장은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 내 위치하여, 수탁기간 중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주차장 현황 및 조건

주차장명	위 치	급지	면적 (㎡)	주차 면수	운영시간	최저입찰가격
신탄진역 앞 공영주차장	신탄진동 140-25	3	1,537	41면	00:00 ~ 24:00	10,92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은 총 수탁기간(1년 중) 무료개방일(법정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수탁료 임을 감안하여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탁기간 : 1년 (2019. 08. 01. ~ 2020. 07. 31.)

2. 입찰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지역제한 경쟁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제

3. 입찰참가자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

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법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대전광역시에 등재되어 있는 개인으로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사람.

4.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의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입찰집행 (개찰)일시	입찰서 제출처	개찰장소
2019. 7. 11.(목) 10:00 ~ 2019. 7. 18.(목) 16:00	2019. 7. 19.(금) 10:00	http//www.onbid.co.kr	대덕구청 입찰집행관 PC

※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 취소는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 후에는 동일 물건에 대하여 다시 입찰 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유효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또는 "신한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 또는 신한위탁 계정" 입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7. 낙찰자의 결정방법

○ 1인 이상 참여한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1인이 입찰하는 경우에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유효한 입찰로 성립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 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주민등록등본(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사본) 1부.

○ 손해(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가입증명서) 1부.

○ 제출기한 : 2019. 07. 26.(금) 16:00까지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0. 관리계약 체결

가. 위 · 수탁 관리계약 체결 : 낙찰자의 제출서류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입찰보증금은 우리구로 귀속함

나. 계약보증금의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 포기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로 귀속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체결 유의사항

○ 낙찰자는 **2019년 7월 26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수탁료 납부 : 계약 체결 시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료(=낙찰금액)는 선납 또는 분기별 분할 납부 (매분기 개시전월 납부통보에 의거 납부 / 분할납부시 연1.97%의 이자납부)

13.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주요 위탁조건(운영기간, 유료운영시간, 주차요금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주차요금 및 주차장관리자 실명표시제 실시 등 수탁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는 조건부 선정이오니, 공고문 및 계약서(안)등을 숙지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입찰 참가 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입찰시 입찰조건 및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입찰금 과다

제출로 인한 적자발생 등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 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1588-5321)

○ 계약, 위치,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92)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 “온비드” 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납부여부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 입찰결과 : 온비드/나의 온비드/입찰내역

2019. 7. 1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634호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2차)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관내에 경작지를 소재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업인

3.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등

4. **지원금액** : 10,171천원
   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 보조지원 (자부담 40%)
   ②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교부)하며 일부 지원대상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2019. 7. 10 ~ 2019. 7. 17. (8일간)

6. **접수기간** : 2019. 7. 10 ~ 2019. 7. 17. (8일간)

7. **접 수 처** : 대덕구청 기후환경과

8. **제출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시설설치계획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등), 토지사용승낙서
   ※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9.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①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②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③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 대책 등 자구노력

④ 과수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⑤ 기타, 피해 우려지역 등 구청장이 정한 우선순위 평가에 의해 결정

10. **유의사항**

① 전기울타리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공사 등록업체를 통하여 설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등은 제외됨

③ 시설물의 사후관리

- 관리주체 : 설치지원 받은 농가(전기울타리의 주기적 점검 및 확인)
- 관리기간 : 시설 설치 후 5년간
- 관리방법 :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 경영상 또는 기타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이 불가피할 경우 승인 후 시행
- 농경지 매매, 임대차로 인한 설치시설물 관리주체 변경 시 신고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하여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 할 경우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조치

11. **기타** :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기후환경과(☎042-608-68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붙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류	
	설치기간 . . . ~ . . . (일간)	
	설치비용	지원금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군・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구비서류1】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비 신청사유서

□ 신청토지

위 치	지목	면적(㎡)	사업량(M)	토지소유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 피해현황

피해기간	피해면적(㎡)	피해금액	피해농작물	가해동물	예방대책	비고

□ 신청사유

○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덕구청장 귀하

【구비서류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 사업기간 : 2019년 월 일 ~ 2019년 월 일

○ 사 업 비 : 원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사 업 량 : 면적 (㎡), 길이 (M)

□ 세부사업내용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번지

○ 시설종류 :

○ 설치방법 :

○ 보조금 이외의 부담방법 :

□ 사후관리 계획

○ 설치업체 :

○ 보조사업자 :

□ 사업효과

○

○

□ 신청지 전경 사진

□ 사업량 산출기초(M)

【구비서류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

□ 사업량 : 면적 (㎡), 길이 (M)

□ 설치비용

(단위:원)

총사업비	재료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기타	비고

□ 보조사업에 충당하는 금액

(단위:원)

사업비	보조금	자부담	비고

□ 산출내역서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금 액(원)	비고

(붙임 : 견적서1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19-638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CNCITY에너지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연축동 102번지 일원	도시가스관 보수	연축동 102번지 일원	300	소형고압블럭	14	'19.7월중 (착공일로부터 20일)	34.8 (착공일로부터 20일)	-
				300	투수콘	15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사 진 대 지(제2019-36호)

굴착위치	연축동 102번지 일원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640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갈전동	LPG관로 매설	갈전동 233-2 번지 외 7개소	63	아스콘	396.0	'19.7. ~ '19.9. (착공일로부터 60일)	396.0 (착공일로부터60일)	24.9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사 진 대 지(제2019-37호)

굴착위치	갈전동 233-2번지 외 7개소 일원	심의1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641호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덕구청장(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 (mm)	포장종류	연장 (m)	공사기간	일시점용 (㎡)	영구점용 (㎡)
1	이현동	LPG관로 매설	이현동 341-1 번지 외 18 개소	63	아스콘	474.0	'19.7. ~ '19.9. (착공일로부터 60일)	474.0 (착공일로부터60일)	29.0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사 진 대 지(제2019-38호)

굴착위치	이현동 341번지 18개소 일원	심의6번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제도로 장학생의 자격요건 확대 및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력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학금 지급 목적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장학금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3조제1항).

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함(안 제6조).

라. 장학금의 지급 정지 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예산확보(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07. 12. ~ 2019. 08. 01.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7. 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6742, FAX : 042-608-3832, E-mail : kangmg9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강민경 (전화 : 042-608-6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를 “ 자녀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을 “자녀 중 제6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 중·고등학생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장학금 또는 학비 지원을”을 “장학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당해 학년 과목전체 평균 성적이 ”4등급” 이상인”을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4등급이상“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급 대상자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자녀가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대덕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지원을 받고 있는자는 제외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자녀 중 제6조제1항의 요건에 적합한 중・고등학생--. ---------- 장학금을 지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① 기금지급대상은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제3조제1항에 적합한 학생 중 당해 학년 과목전체 평균 성적이 “4등급” 이상인 학생으로	제6조(기금지급대상자) ① ---------- 중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고등학생

한다. ② 기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동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사람 중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2. (생 략)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 기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 3. (생 략) 4. 기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5. (생 략) ② (생 략)	은 직전 학기 평균 “4등급이상----. ② ----------. 1.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급 대상자를 ----------. 2.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지급정지) ①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강 민 경
연 락 처	(042) 608-674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9 - 62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로 장학생의 자격요건 확대 및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의 학력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 절차 중 불필요한 절차를 정비함.(안 제5조제3항).

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고등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게 되므로 장학금의 지급범위와 상충되는 내용을 정비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예산확보(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07. 12. ~ 2019. 08. 01.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7. 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6742, FAX : 042-608-3832, E-mail : kangmg9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정책과 담당자 강민경 (전화 : 042-608-67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보”를 “제2항에 따른 통지”로,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를 “구청장에게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지급의 정지)”를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보”를 “보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학년도 장학금 신청서

1. 신청자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명 (한자)	(　　)	생년월일		성별	
학 교 명		학　　과	학년	과	
성　　적		연 락 처			

2. 보호자(친권자 · 부양의무자 등)

성 명	본인과의관계	연 령	직 업	비고(가구원수)

3. 재산 및 소득상황

재 산 액(천원)	월평균 소득(천원)	비　　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가.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나. 최종성적증명서 또는 최종생활기록부 사본 1통.

다. 재산 및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조확인		년　월　일
	소　속	동행정복지센터
	직　위	급
	성　명	(인)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덕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선발) ①·② (생 략)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선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통지------- 구청장에게 장학금 ----------.
	④ 제3항에 따른 ----------.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통합관리기금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수업료로 한다.	<삭 제>
제8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 보고---------.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강 민 경
연 락 처	(042) 608-674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19-63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정비함(안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한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의2).

다.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해 관계공무원·기관·단체·전문가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5) 입법예고: 2019. 07. 12. ~ 2019. 08. 01.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8. 0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전화 : 042-608-6564, FAX : 042-608-3836, E-mail : hjleehjl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가족과 담당자 이현정 (전화 : 042-608-656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대덕구청장”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상 정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위

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대덕구민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회의 장기 불참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종전의 제6조)제3항 중 “개의(開議)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8조) 중 “규정”을 “정”으로,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여

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성별영향평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2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2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기획홍보실장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성별영향평가 및 성평등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 설>	3.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대덕구민
<신 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회의 장기 불참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회의) ①·② (생 략)	제7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하고----------.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대전광역시대	<삭 제>

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세칙) -------- 정---------- 위원회의 운영----------.
<신 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

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과	
담 당 자 연 락 처	이 현 정 042-608-6564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